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2019. 11. 26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4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(금)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(금)

2. 제안이유

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-
- 1) 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 대상 :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

나. 출연 필요성

- 1)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
- 2) 구에서 위탁하는 문화예술시설 운영과 지역축제 등 위·수탁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
- 3)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,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

다. 출자금 규모 : 5,223,887천원

▶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, 2020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심의·의결

4. 참고사항

가. 출연금 편성내역, 지출예산총괄(부서별)

나. 관계법령

- 1)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2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- 3)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
(운영재원)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,

-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
금천구 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한
(재)금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함.

- 본 동의안은
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
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
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
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
법률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.

- 붙임 1) 출연금 편성내역 1부.
2) 지출예산 총괄(사업별) 1부.
3) 관계법령 1부.

붙임1

출연금 편성내역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2020년	2019년	증 감	비 고
계		5,223,887	4,839,106	384,781	
인 건 비 소 계		1,983,122	1,814,555	168,567	
	정 규 직 급 여	1,891,736	1,774,341	117,395	
	비 정 규 직 급 여	91,386	40,214	51,172	
퇴 직 급 여 총 당 금		161,800	149,834	11,966	
지 역 문 화 진 흥 사 업 비		655,556	684,285	△28,729	
독 서 문 화 진 흥 사 업 비		1,408,614	1,161,436	247,178	
일 반 운 영 비 소 계		1,014,795	1,028,996	△14,201	
	지 급 임 차 료	6,840	9,240	△2,400	
	사 무 관 리 비	119,124	110,803	8,321	
	차 량 유 지 비	1,080	1,080	-	
	보 험 료 (신 원 보 증 보 험)	1,300	1,300	-	
	지 급 수 수 료	11,964	11,964	-	
	공 공 요 금 및 제 세	30,658	25,860	4,798	
	국 내 여 비	146,160	143,640	2,520	
	수 선 유 지 비	25,777	12,527	13,250	
	도 서 인 쇄 비	1,600	1,600	-	
	회 의 운 영 비	34,912	13,312	21,600	
	행 사 홍 보 비	15,500	5,000	10,500	
	보 상 금	8,000	-	8,000	순증
	업 무 추 진 비	10,800	9,000	1,800	
	관 서 업 무 비	8,420	7,220	1,200	
	교 육 훈 련 비	11,605	7,096	4,509	
	복 리 후 생 비 (4 대 보 험 포 함)	345,120	354,928	△9,808	
	포 상 금	4,800	4,800	-	
	성 과 급 (기 관 경 영 평 가)	231,135	309,626	△78,491	

붙임2

지출예산 총괄(사업별)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0년	2019년	비교증감	비고
합 계		5,223,887	4,839,106	384,781	
001	경영지원팀	3,116,621	2,993,385	123,23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건비(예산편성준인원[2인] 적용 및 임금인상률 반영) 117,395천원 · 평가급(2018년은 2017년 하반기분까지 편성) △ 78,491천원 · 직원 복지 리조트 예산 미편성 △ 34,000천원 · 재단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 12,000천원
002	문화사업팀	655,556	684,285	△28,72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아트홀 공연전시비 증액 50,000천원 ·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수선유지비 증액 18,960천원 · 금천하모니벚꽃축제 비용증액편성 18,800천원 · 문화통장 예산 증액 편성 15,000천원 · 빈집프로젝트 예산감소 △130,000천원
003	도서관 운영팀	842,524	650,772	191,75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서관 금나래도서관 청소용역 비용 1명분 추가 편성 42,000천원 · 금천청년사서 예산편성 95,553천원 · 플라잉북 유지보수 및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비용 증가 21,900천원
004	독산도서관	168,274	155,649	12,6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,000천원 ·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,000천원 · 도서관 노후화로 수선유지비 냉난방비 세관비등 편성 4,320천원
005	가산도서관	145,274	134,247	11,02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,000천원 ·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,000천원
006	금나래 도서관	76,552	63,108	13,44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,000천원 ·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,000천원
007	시흥도서관	175,990	157,660	18,3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페스티벌 운영비 증액편성 12,000천원 · 북스타트 사업 신규 편성 5,000천원 · 특화사업비용 예산증액 편성 5,000천원 · 꿈꿈프로젝트 예산 예산감액 편성 △5,000천원
008	정책실	43,096	-	43,09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후원회 발족 및 운영 18,500천원 · 운영위원회 회의비 등 16,000천원

【지방재정법】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(해산)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12조(운영재원)

-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 사업 수익금,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직원의 채용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·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·신체조건·용모·학력·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출자·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임직원의 보수 등) ① 출자·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,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·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
제15조(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) 출자·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,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.